

광주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

제정 2018. 5. 10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권리장전은 광주대학교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,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광주대학교 대학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, 언어적,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, 연구할 권리가 있다.

③ 대학원생은 성별, 학력, 국적, 나이, 장애,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.

④ 대학원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사항은 학업 및 연구 성과보다 우선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권리장전에서 ‘대학원생’이라 함은 광주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을 말한다.

② ‘학업 및 연구’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.

③ ‘연구출판물’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.

④ 이 조항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법령 및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통념에 따른다.

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

제4조(자기 결정권)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, 학업 및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장 받을 수 있다.

제5조(학업 연구권)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 되어서는 안 되며,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학업을 지속 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학문적 지도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다.

④ 대학원생의 석·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,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.

제6조(저작권)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,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.

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,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.

제7조(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)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,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,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·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.

제8조(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)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실현 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·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9조(근로제공에 따른 권리) ① 대학원생은 조교, 연구조교,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채용 되는 과정에서 채용 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,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으로부터 학문적·육체적 노동을 제공받는 사람은 명확한 근로시간, 근로내용,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)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영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학과·전공·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장학금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
③ 모든 대학원 학과·전공·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, 일관되며,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.

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

제11조(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)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 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
제12조(지도교수 변경의 권리) ① 지도교수의 퇴직, 질병, 해외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, 대학원장(학과장 등)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,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 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제13조(해결절차)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,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.

③ 대학원생은 침해사실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(그 밖의 권리)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

제4장 대학원생의 의무

제15조(구성원으로서의 의무) 대학원생은 광주대학교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(학업 및 연구)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7조(연구윤리) ①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, 수행,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시, 위조, 변조, 표절, 대필,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
② 대학원생은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연구비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.

제18조(시설사용 및 안전)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 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, 학내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장 대학 구성원의 책무

제19조(대학 구성원의 책무) ①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대학원생의 권리를 알고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.

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학내 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.

부 칙 (2018. 5. 10.)

이 권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